

##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세대주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책 (총무성)

일본정부에서 지급하는 10 만엔 <특별정액급부금>에 대한 신청서는 세대주 주소로 우송되어 세대주가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세대주와 떨어져 지내고 계신 분은 신청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0 년 4 월 24 일~4 월 30 일 ※30 일이 지나도 서류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 배우자의 가정 폭력을 이유로 현재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신청할 것. 신청서는 거주지 시구청 창구, 부인상담소 혹은 총무성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

(a) 부인상담소,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나 시정촌이 발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신고확인서

(b) 재판부의 보호명령결정문 사본 혹은 정본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인에 대한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거주하는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당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